

##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 8-1. 공유재산 및 물품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흥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3,199	2,594,775	1,021	53,942	76	3,607	54,144	2,645,110	
토 지	17,343	490,409	943	37,277	67	2,995	18,219	524,691	
건 물	852	304,223	7	2,807	8	609	851	306,421	
입목죽	3,609	2,567	0	0	0	0	3,609	2,567	
공작물	31,014	1,793,551	69	13,781	1	3	31,082	1,807,329	
기계기구	298	2,231	2	75	0	0	300	2,307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76	1,052	0	0	0	0	76	1,052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7	741	0	1	0	0	7	742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 화촌면 주읍치리 주읍선(212호) 도로확보장공사,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조성사업, 내촌면 답풍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 매입 및 각종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공공용 재산이 증가하였음.

- ☐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525	10,965	54	959	96	295	1,483	11,629	
구 매	1,115	9,332	54	959	3	72	1,166	10,218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410	1,634	0	0	93	223	317	1,411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노면청소차, 버스, 쓰레기수거용트럭 등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 파종기, 경운기, 이식기 등 농기계구입, 책상, 작업용의자, 캐비닛 등의 교체구입에 따라 물품현황이 증가하였음.

###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2,253,953	2,381,466	2,433,937	2,594,775	2,645,110
물 품	8,095	8,420	8,819	10,965	11,62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증감사유 : 상위 공유재산 및 물품 변동 사유 참조

##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홍천군의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06,459	0	0.00%	3,562	0.59%	
일 반 회 계	514,594	0	0.00%	3,562	0.69%	
특 별 회 계	59,522	0	0.00%	0	0.00%	
기 금	32,343	0	0.00%	0	0.00%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483,859	487,329	506,415	558,864	606,459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00%	0.00%	0.00%	0.00%	0.00%
출연금 (D)	2,404	2,214	4,848	5,886	3,562
출연금 비율 (D/A)	0.50%	0.45%	0.96%	1.05%	0.59%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2017년에 (재)홍천문화재단이 설립초기로 많은 출연금이 투자되었으나 안정화 되면서 출연금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함

#### ❖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b>소계</b>	<b>3,562</b>			
	일반회계	(재)한국지역 진흥재단	6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2018년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재)홍천메디칼 허브연구소	1,000	홍천메디칼허브 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2018년도 (재)홍천메디칼허브 연구소 육성사업 출연금
		(재)홍천문화재단	1,607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	2018년 (재)홍천문화 재단 출연금
		(재)홍천문화재단	785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	2018년 (재)홍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출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제진흥과	68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2018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6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재)홍천메디칼 허브연구소	90	홍천메디칼허브 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3차년도)출연금

###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을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홍천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1	3,482	9,985	2,500
출연 기관	소계	21	3,482	9,985	2,500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14	1,090	6,587	358
	(재)홍천문화재단	7	2,392	3,398	2,142

-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 출자기관이란?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 출연기관이란?

-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8-4. 지방공기업 현황

-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홍천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가~마)
직영	홍천군 상하수도 사업소	51	134,995	183	10,400	11,204	△804	가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8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8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 ❖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직영	홍천군 상하수도 사업소	△5,023	△2,905	△2,326	△1,745	△804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넓은 지역여건으로 인한 상수도 신설공사 및 수선유지비용 과다에 따른 당기순이익 적자